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6. 17 선고 2019나58980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왕미양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진

피고, 항소인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

담당변호사 김호민, 박종익

변론 종결 2021. 5. 18.

판결 선고 2021. 6. 17.

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5. 21. 선고 2018가단72353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3,918,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27.부터 2021. 6. 17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.
3. 소송총비용 중 1/8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95,9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(이하 'F'이라 한다)에 하도급 주었고, 원고는 위 공사 중 금속, 창호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를 F로부터 하도급 받았다.
나.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F 사이에, 계약금액 144,5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의 2018. 3. 12.자 하도급계약, 추가분 계약금액 36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의 2018. 5. 16.자 하도급계약, 추가분 계약금액 24,000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의 2018. 5. 20.자 하도급계약이 각 체결되었고,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 후 20일 및 25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위 각 하도급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129,000,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 5, 7,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

합계 224,950,000원[= 204,500,000원(= 144,000,000원 + 36,000,000원 + 24,000,000원) +

부가가치세 20,450,000원]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129,000,000원을 뺀 나머지 95,95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피고는 지하폴딩주위마감 등 공사 3,000,000원, 옥탑블랙단열 등 8,352,000원합계 11,352,000원은 최초 하도급계약의 공사범위인데 원고가 이를 추가분으로 중복하여 청구하였으니 위 금원이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, 갑 제8호증의 4, 갑 제10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중복 청구라고 주장하는 위 공사들은 추가공사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(2)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2018. 3.경 6,150,000원, 2018. 4.경 40,000,000원 합계 46,150,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원고가 F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.

(3)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시공 및 오시공으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위 인정사실, 앞에서 든 증거,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'구분'란 기재와 같은 미시공 내지 오시공이 존재하고, 아래 표 '공사비'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,031,903원 상당의 공사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순번	구분	공사비
1	외부 유리벽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시공	1,292,921원
2	FSD001 단열문, FSD002 단열문, FSD001 방음문을 각 설계도 서와 다른 철문으로 시공	2,481,861원
3	H호, I호 계단 마감공사(계단 핸드레일 및 디딤판) 미시공	858,938원
4	실리콘공사 미시공	4,547,382원
5	옥탑층 계단 미시공	1,360,409원
6	옥탑 두겹 및 유리난간 흔들림	277,479원
7	옥상 철골 그라우팅 누락	1,036,219원
8	옥탑 유리난간 실리콘 코킹 누락	176,694원
	합계	12,031,903원

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95,950,000원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,031,903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위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 20일 및 25일 무렵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인데,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. 3. 23.자 준비서면이 2020. 3. 24.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, 이로써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.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[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(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), 미시공 내지 하자보수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].

피고는 원고가 그 외에도 외벽 프레임 볼트 및 연결철물 녹방지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고, 구조용 H빔을 절단재 용접하여 사용한 오시공, J호, K호 계단 마감공사(계단 핸드레일 및 디딤판) 및 추가계단 외 스텐후렘 미시공, 각 계단 안전난간 부설시공(흔들림 등 하자), 지하보일러실 녹방지 도색 등을 하지 않는 하자가 있어 그 시공비용, 하자 보수비용 등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원고의

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을 제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오시공, 미시공, 하자를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소결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,918,097원(= 95,950,000원 - 12,031,903원) 및 이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.2. 27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. 6. 17.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,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은주, 판사 정 원, 판사 김유성